#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66

발의연월일: 2025. 6. 5.

발 의 자:이정문・박홍배・임광현

박수현 • 이학영 • 문진석

김 윤 • 이연희 • 오기형

한민수 · 김남근 · 김영환

강준현 • 박주민 • 이소영

김현정 · 김성환 · 박균택

이성유 • 이강일 • 이인영

문금주 • 조승래 • 채현일

박상혁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

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 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5

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 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 가-----본점소재지나 인접 集하여야 한다. 한 곳에 소집하여야----. <신 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 등) ① ~ ⑥(현행과 같음)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 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 ---. <후단 삭제> 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

<u>다.</u> ⑧ (생 략) <신 설>

#### ⑧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 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 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 다.
-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신 설>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 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 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